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온천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방법,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 방법·절차 구체화(안 2조의2 신설)

- 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일간신문, 지자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주민열람을 실시하도록 규정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견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나. 온천공보호구역 변경승인 신청 명시(안 2조 개정)

- 1)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승인 신청서”를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중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을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등)”으로 하고, 제2조제1항의 본문 “지정승인 신청서”를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명칭을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변경승인) 신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요내용을 해당 온천공보호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는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온천원보호지구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변경승인) 신청

「온천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승인 신청 내용	위 치			
	면 적			
	승인신청 사유 및 효과			
온천 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 붙임 :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상호(명칭)		법인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위치			
	면적			
	사유 및 기대효과			
온천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온천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변경된 온천개발계획)과 그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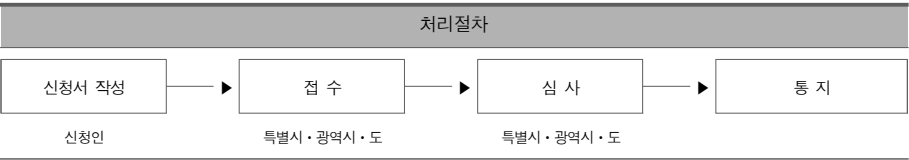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귀하

첨부서류	1. 지리적 여건	수수료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없 음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① ----- -----지정승인 신청서----- -----.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등) ① -----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
〈신설〉	제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요내용을 해당 온천공보호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는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온천원보호지구를 보급지역으로

현 행	개 정 안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제4항

현 행	개 정 안
	<u>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u> <u>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u> <u>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u> <u>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연 락 처	(044) 205 - 3522